

인쇄는 ‘문화산업’입니다



“

요즘 인쇄업계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지원이 미흡하며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이나 새로운 인쇄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범업계적인 힘만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여튼 이제는 정부의 어느 부서나 법률의 해당조문이 인쇄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정확한 채널을 통해 접근해야 할 때이다.

”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가치는 없지만 가끔씩 인쇄가 문화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산업분야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얼핏 생각하면 헛갈릴 수도 있겠지만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인쇄는 문화와 산업을 포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개념적으로 보면 문화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인바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 인쇄술이고 인류의 지적혁명이 인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므로 인쇄는 그야말로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단위.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공의사업, 운수·통신·창고업, 건설업, 상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 사회적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지를 수 있으므로 인쇄 역시 당연히 산업영역인 것이다.

이런 설정에서 인쇄가 문화나 산업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고 법률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하위 항목에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인쇄를 문화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제4조), 전문인력양성(제16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20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제24조), 문화산업진흥기금(제5장) 등 각종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조(목적)에서도 ‘인쇄문화산업’의 지원, 육성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2항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출판및인쇄진흥법’ 모두 인쇄를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인쇄업계 사정은 두 법률에 의한 지원이 미흡한 설정이며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이나 새로운 인쇄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범업계적인 힘만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사료된다. 하여튼 이제는 정부의 어느 부서나 법률의 해당조문이 인쇄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정확한 채널을 통해 접근해야 할 때이다. 글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오세익·편집주간〉